

구미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최근 아동·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·가정 폭력 관련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아동·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강화 등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·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함(안 제4조)
-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·운영함(안 제5조~제7조)
- 아동·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련법령

가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다. 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구미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구미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2. “아동·여성폭력”이란 아동학대,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, 학교폭력, 유괴, 실종 등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의회,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역연대의 설치)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,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1명을 두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아동·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시 아동·여성 폭력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구미시의회 의원
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
3.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
4.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

5.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경찰·사법 관련기관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7조(지역연대의 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

2.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3.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
4. 지역 내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
5.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,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.

-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11조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의한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실비보상) 시장은 지역연대 기능수행 및 아동·여성보호 시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

◎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 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 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 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 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◎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◎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“성매매피해자등”이라 한다)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2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신설(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
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